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74
----------	------

발의연월일 : 2024. 10. 24.

발의자 : 박수민 · 윤영석 · 이종욱
권성동 · 강승규 · 윤한홍
강명구 · 조지연 · 이인선
고동진 · 박수영 · 박준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중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

항제1호라목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임금”을 “임금, 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내국인에게 지급된 다음 구분에 따른 배당금액의 합계액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배당·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

의3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 다. (생략)

<신설>

2. (생략)

③ ~ ⑩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내국인에게 지급된 다음
구분에 따른 배당금액의
합계액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
금처분에 따른 배당(「상
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
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
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
한 중간배당 · 분기배당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